



서울교육대학교와 국민대학교 간의 교사양성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정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국민대학교는 교사양성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제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정서는 서울교대와 국민대학교 간에 교사양성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업무 협력의 분야) 본 협정서에 대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행사의 공동 추진
2. 인적자원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
3. 학생 및 교수의 상호 협의된 시설물에 한정해 상호 이용
4. 교원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강사지원
5.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비용의 부담) 서울교대와 국민대학교는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.

제 4 조 (보안) 본 협정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, 문서는 양 당사자 간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제한하며, 공개 필요시 서면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.

제 5 조 (협정의 변경 및 해지)

1.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정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2.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6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정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① 본 협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
 - ② 공동 협력사업 평가결과 협력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
 - ③ 기타 양 기관 협력사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
제 6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

1.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정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.
2.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3. 제3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 7 조 (기타) 본 협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.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2011년 1월 5일

서울교육대학교
총 장 송 광 용

국 민 대 학 교
총 장 이 성 우